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511호
- 나. 발 의 자 : 장인홍 의원(찬성 11명)
- 다. 발의일자 : 2015. 6. 9.
- 라. 회부일자 : 2015. 6. 12.

2. 개정이유

- 현재 공익제보자가 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와 관련된 공익제보를 하였을 경우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보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그 자녀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공익제보로 인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학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장인홍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511호로 발의되어 201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여 자녀의 전학을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의견

1) 동 조례의 개정취지에 대한 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동 조례 제9조에서는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규정하고 공무원이 공익제보자의 개

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이를 징계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¹⁾

- 그러나 동 조례에서는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에 협조한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제보자가 제보대상 학교의 학부모일 경우 그 자녀가 받게 될 학교 내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해당 학교 공익제보자 자녀에 대해 전학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익제보자 자녀를 위한 실제적인 보호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각 단위 학교별 전학에 대한 검토

가.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이사 등의 일반적인 사유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합니다.2)

그러나 해당 초등학교의 장이 일반적인 사유가 아닌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학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이 규정한 이사 등의 일반적인 사유가 아닌 전학에 해당하여 학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장의 전학 학교 지정으로 전학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나. 중학교 전학의 경우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사 등의 일반적인 사유로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4) 그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③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리고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사유로 인한 전학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5항5)에 따라 초등학교 전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고등학교 전학의 경우

○ 고등학교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6)에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5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에 따라 전학 허용시기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 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 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 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 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 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3. 삭제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 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 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 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동일 계열간은 3학년 1학기까지, 타 계열간은 2학년 1학기까지로 하고 있습니다.⁷⁾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공익제보 관련 전학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공익 제보시점과 전학 신청시점 간 시간적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전학배정시점이 위 전학허용시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 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을 사전 공지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종합검토 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자의 자녀까지도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향후 관련 지침이나 계획을 정비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에 대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감사관실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음”(감사관-4876(2015.06.07.)) 의견을 제시하였고 학교장이 학생선발권을 갖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침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pp2~3.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2.1.] [대통령령 제25961호, 2015.1.6., 일부개정]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도서·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⑥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삭제 <2011.12.30.>
2. 삭제 <2011.12.30.>
3. 삭제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고등학교 주간부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의 전학의 경우에는 전학하려는 사람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정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사람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 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